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류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95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2. 조문별 검토	10
가. 목적	10
나. 정의	11
다. 한류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6
라. 실태조사	19
마. 한류정책심의위원회	21
바. 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3
사. 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25
아. 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	27
자. 조세의 감면	29
차. 보칙	31

※ 참고자료

1. 관계 부처 의견	34
2.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35
3. 법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3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25.

다. 회부연월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현상임.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류콘텐츠의 발전, 한류연관산업의 진흥 등 국가적 지원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류”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일컫는다고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류콘텐츠

츠와 한류연관산업 등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 등 한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한류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연관산업의 발전 및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한류사업자는 한류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1990년대 말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부터 비롯된 한류(韓流)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그 대상이 소비재(뷰티, 패션 등)·음식·관광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표 1] 한류의 시기별 구분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신한류 (K-Culture)
시기	1997년~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2019년	2020년~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스타 중심	한류의 세계화 세계적 스타·상품 등장	한류의 다양화 + 세계화 (온라인 소통)
핵심 분야	드라마	대중음악	대중문화	한국문화 + 연관산업
대상 국가	아시아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구미주 일부 등	전 세계	전 세계
소비자	소수 마니아	10~20대	세계시민	세계시민

주: K-Culture는 신한류의 영문 명칭 겸 국제 홍보브랜드

자료: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0.7.16.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을 외국인과 공유하는 다양한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가치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3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024. 4.)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은 76억 500만 달러, 소비재 및 관광 수출은 65억 6,000만 달러, 생산유발효과는 32조 4,147 억원으로 추정됨.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¹⁾을 선정하고,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류의 영향력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한류 지원과 관련된 법률 체계를 보면, 한류의 주요 구성요소인 ‘문화산업’에 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음악·게임·관광 등 한류 관련 산업([표 2] 참조)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1) 현 정부 국정과제 58번

[표 2] 한류 관련 산업

구 분	분 야
대중문화	방송, 영화, 음악, 공연(순수예술), 게임, 웹툰, 출판
소비재·서비스 산업	뷰티, 패션, 음식, 관광

자료: 「2023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3.

이에 제정안은 문체부가 범부처 한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한류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특히, 문체부는 2020년 3월부터 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2020년 6월 콘텐츠정책국에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처별로 분산된 한류 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법 제정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 및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제정안의 “한류”, “한류산업” 등은 영화, 음악, 방송 등 문화 전반에 걸친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그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관계부처 의견으로서,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는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콘텐츠산업진흥

법」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은 예산과 달리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고,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므로, 국가의 조세특례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밖에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이하에서 해당 조문별로 나누어 상술하겠음.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총칙, ② 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한류의 기반조성, ④ 한류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류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류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한류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실태조사) 제9조(연차보고서) 제10조(한류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한류의 기반조성	제11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12조(연구개발의 촉진) 제13조(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5조(한류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4장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 지원 등	제17조(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등) 제18조(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 제19조(한류사업자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제20조(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제21조(조세의 감면 등) 제22조(협회의 설립)
제5장 보칙	제23조(국고 보조 등) 제24조(감독)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시행일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는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정책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함.

다만, 제정안의 내용이 한류정책계획 수립, 한류기반조성,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 지원 등 “한류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수정의견을 제시함.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u>한류</u>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u>한류의 정책목표</u>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한류정책</u> ----- ----- ----- <u>정책목표</u> ----- ----- ----- -----.

나.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한류콘텐츠”란 한류를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에 디지털기술 등의 적용·미디어와의 융합 등 한류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한 것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문화적, 산업적 요소를 제작(기획·개발을 포함한다)·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안 제2조제1호는 “한류”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전반”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류는 문화적 “현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 규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상”과 “산업”을 구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제정안 내 여러 규정에서 “한류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²⁾되나 그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 안 제2조제4호(“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등

“한류”에 대해서는 문화현상으로만 정의하되, 한류에 관한 산업에 대해서는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으로 별도 정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³⁾.

또한, 한류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생산·소비·유통하는 현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각 정책집행기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개념정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가 공연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포괄하고 연관산업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류의 법적 정의를 “대중문화”로 한정하는 것은 한류의 확장가능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문화” 일반으로 수정하고, “한류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한류”란 우리나라의 <u>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u>	1.----- <u>문화가 해외의 문화</u> -----

3)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한류콘텐츠”란 한류를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에 디지털기술 등의 적용·미디어와의 융합 등 한류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한 것을 말한다. <신 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문화적, 산업적 요소를 제작(기획·개발을 포함한다)·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 ----- ----- ----- -----. 2. (현행과 같음) 3. <u>“한류산업”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유행하여 소비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소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u>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u>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u>----- -----.

다만,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을 살펴보면, “신한류(K-Culture)”를 한국문화와 연관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문화시설 인프라, 식품, 의료, 교육, VR 등 신기술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외수출 또는 국제교류 등과 관련된 상품·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신한류사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표 4]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세부과제(일부 발췌)

주요 내용	주관/ 협력부처
○ 문화시설 체험 공간 조성 및 광화문 프로젝트 추진 박물관·미술관 등 자원활용 체험공간 등 마련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문체부 과기정통부
○ 한류 활용 식품산업(K-푸드, K-피쉬) 지원 해외 대형마트·영화관 연계 판촉전, 한국 농산물 전용 판매관 한국식품 박람회 개최, 한류스타 연계 K-푸드, K-피쉬 상품 제작 및 현지 홍보	농식품부 해수부
○ 의료관광 정보제공 : 의료관광 안내센터 이용 방문객 대상 의료 정보 안내 및 관광지 소개	문체부 복지부
○ 의료·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관광코스 개발 시 의료관광 관련 연계 가능 국내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홍보 ※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 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임.	문체부 복지부
○ K-교육 해외 확산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개발, 공유 및 확산, 인적교류 강화 ○ 한국어 교원 파견·양성 확대 현지 학교·세종학당 교원 파견, 현지 초·중등 한국어 교원 및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부 문체부 외교부

자료: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0.7.16.

4) 최근 “한류”라는 용어는 국제교류, 수출 등의 사업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차용되고 있음.(“의료 한류”, “기술한류”, “행정한류”, “법무한류” 등)

그러나 한류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광범위한 정책대상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설계 및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류산업의 범위가 문화산업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교육 등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되, “한류”, “한류산업” 등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다. 한류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제6조(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한류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한류정책의 분야별 추진방향과 추진시책 3. 한류콘텐츠의 발전방향과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한류연관산업의 발전방향과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한류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한류정책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소관하는 영역에서의 한류정책 추진방향, 추진시책 등을 구체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한류정책 추진방향, 추진시책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행정기관의 한류정책 추진방향, 추진시책 등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한류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한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류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한류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한류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간사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한류정책을 종합적·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각각 한류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한류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상기 조항 심사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한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한 표현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관되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고,

[표 5] 제정안 한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규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제6조(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행정기관의 한류정책 추진방향, 추진시책 등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한류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한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한류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한류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한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표 6] 기본계획 등의 위원회 심의·의결 유사 입법례

「원자력진흥법」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안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하는 “종합시행계획”은 안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같은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셋째, 안 제7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한류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봄.

한편,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신설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⁵⁾가 있겠음.

5) 동 검토보고서 21p. 참조

라. 실태조사(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 등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사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표 7]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조항 수정의견

제 정 안	수정의견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 등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8조(실태조사) ① ----- ----- ----- -----정기적으로-----

제 정 안	수정의견
야 한다.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만, 한류 실태조사의 주기에 대한 심사 시에는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이 유행에 민감하고 산업환경의 변화가 빨라 현장동향·실태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구적 측면에서 안 제8조의 “5년마다 정기적으로”는 의미가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5년마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음.

한편, 안 제8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데, 이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하나의 항에 포함하는 다른 입법례⁶⁾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마. 한류정책심의위원회(안 제10조)

안 제10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참여를 통해 한류 정책 협업 범위 확대와 한류 관련 산업 간의 융합을 위한 중복규제 해소, 기술개발 협력 및 인프라 공동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원활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⁷⁾를 활용하거나,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전문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체부에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K-콘텐츠 수출협의회(舊 한류협력위원회, 문체부 훈령)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⁸⁾.

7)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한편,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⁹⁾ (2023.11.17. 시행)에 따라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하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행정안전부는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022.7.)을 수립·시행한 바 있으며, 유사한 취지로 정부에서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존속기한 연장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규정이 시행 중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류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
2. 제9조의 연차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
3.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 및 데이터분석결과
4. 한류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해외 문화콘텐츠시장동향데이터
5.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도·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
6. 그밖에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등 한류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③ 정부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을 위한 데이터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한류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마케팅 지원 등 한류콘텐츠 수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한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류정보시스템 구축과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

다만, 체계자구적 측면에서 안 제14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한류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마케팅 지원 등 한류콘텐츠 수출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한 것으로 보이나,

안 제13조의 한류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 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와 관련한 신산업·기술 창업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대·중견·중소기업”이라 한다) 등 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등의 공동 발굴·육성 2. 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기업과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3. 한류관련 사업의 공모·제안,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4. 한류관련 연구개발 및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동기술개발 5. 해외의 창업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협력 6. 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기업과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문화 조성 및 분위기 확산 7. 그 밖에 한류관련 민관협력형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과 협력하여 한류수출관련 유망 창업기업, 투자자 및 보육기관 등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발굴·육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 유망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7조는 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등을 위한 규정으로, 한류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산업 분야 발굴 및 기술 개발, 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 산업 전반의 투자 및 기술혁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2조에서 “신산업 창업” 및 “기술창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데에 비해 제정안은 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떤 사업이 신산업창업 또는 기술창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표 8] 유사 입법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① 정부는 신산업·기술 창업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대·중견·중소기업”이라 한다)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기술 창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등의 공동 발굴·육성 (이하 생략)

아. 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한류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한류사업자에 대하여 투자·융자 등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는 한류사업자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8조는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 규정으로 한류 산업 및 한류 연관산업 대상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관련 산업-투자자 간 협력 강화 및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우선, 안 제18조제2항의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은 현재 ‘한국모태펀드’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에서 운용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계정 내 한류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투자가 가능하고, 법령상 규정되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범위에 따라 기존 펀드 내 투자 대상 및 규모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¹⁰⁾.

10) 현재 문화산업의 경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의해 투자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투자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음, 안 제18조제3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 11)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분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으로 한류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상·공연·음반·게임 등 한류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 법률에서 한류사업자를 신기술사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낮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외의 법률에서 신기술사업자를 의제하는 규정을 도입한 사례가 없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자. 조세의 감면 등(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조세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연관산업의 발전 및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2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산업의 발전 및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류 관련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지방세 감면 특례는 「지방세법」 보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¹²⁾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21조의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9] 조세 감면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규정
「건축서비스법」	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조세의 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은 예산과 달리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고,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므로, 국가의 조세특례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상기 입법례에서 보듯이, 각 개별법에서는 지원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분야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차. 보칙(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 정 안
제5장 보칙 제23조(국고 보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콘텐츠의 개발과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기금관리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5장 보칙으로 국고 보조, 감독,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먼저, 안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정안에서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콘텐츠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볼 것임.

다만,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¹³⁾, 개별법에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및 금액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근거가 없어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목적 및 용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¹⁴⁾을 고려하여 안 제23조는 국고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다음, 안 제25조는 제정안에서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것임.

다만,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구분하기 위하여 ‘권한’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¹⁵⁾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조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일부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14) 안 제23조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업”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15)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속 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u>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u>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신 설></u>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6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u> <u>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관계 부처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24.7.10)	•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은 예산과 달리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의 실익 없음
국무조정실 (2024.7.11)	• (제10조) 국무총리 소속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콘텐츠 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 중으로, 하위 분야에 대해 별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불필요 -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 따라 성격·기능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 - 한류콘텐츠에 특화된 위원회 필요시 논의의 전문성, 회의 개최의 융통성 고려, 문체부 소속 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임
행정안전부 (2024.7.11)	• (제10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 따라 한류정책심의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하므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문체부의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금융위원회 (2024.8.21.)	• 이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상·공연·음반·게임 등 한류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률에서 한류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낮으며, 본 법안 외 타법에서 신기술사업자 의제 규정 도입 사례는 없는 상황 - 2023년 중 신기업권의 영상·공연·음반·게임 투자액 2,788억원(여신협회)

참고 2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20,748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등	○(일반회계)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2,248백만원, 해외거점 운영 5,673백만원, 해외 현지출원 및 등록 327백만원,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6,000백만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2,000백만원,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 4,500백만원
'23년	35,248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등	○(일반회계)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5,248백만원,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심층정보 제공 1,500백만원, 해외거점 운영 10,173백만원, 해외 현지출원 및 등록 1,827백만원,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6,000백만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2,000백만원, K-브랜드 홍보관 조성 4,000백만원,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 4,500백만원
'24년	53,775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등	○(일반회계)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5,248백만원,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심층정보 제공 1,500백만원, 해외거점 운영 21,950백만원, 해외 현지출원 및 등록 2,577백만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7,000백만원, K-브랜드 홍보관 조성 11,000백만원,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4,500백만원

참고 3

법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제정안	예산 현황('24년 예산 기준)	비고
1	□ 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한류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1억원) *(참고) 콘텐츠 장르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예산- 게임콘텐츠 96백만원, 방송 콘텐츠 80백만원, 음악콘텐츠 78백만원	'24년 타 부서 유사 사업 근거로 추계 추가재정 소요 예상
2	□ 한류정책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8조)	-해외한류실태조사 시행(3.6억원)	'24년도 예산 편성
3	□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안 제10조)	-비용 추계 곤란	
4	□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11조)	-한류 콘텐츠 수출 전문 인력양성(20억원) · 교육 프로그램 인건비(11억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9억원)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13.6억)	'24년도 예산 편성
5	□ 연구개발의 촉진 (안 제12조)	-한류 해외 동향조사 및 정보제공(8.2억원) · 해외통신원 운영(1.9억원) · 한류콘텐츠 해외동향 분석, 한류백서 등 연구 와 정보제공(6.3억원)	'24년도 예산 편성
6	□ 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13조)	-한류 관련 통합정보 포털 구축(2억원) · 한국국제교류진흥원(KOFICE) 한류 관련 보고 서 및 데이터 등 제공 홈페이지 구축(2억원)	'25년도 타 부서 사업 중 유사 사업 근거로 추계 추가재정 소요 예상
7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안 제14조)	-국제교류 활성화(16억원) · 세계문화산업 포럼 개최(2억원) ·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14억원) -한류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310.4억원) ·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 심층정보 제공(15억원) · 한류 문화교류 사업(31.4억원) ·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지원(39억) · 관계부처 한류 박람회 개최(70억) · 관계부처 해외홍보관 운영(110억) ·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45억)	'24년도 예산 편성
8	□ 한류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안 제15조)	-저작권 보호 활동 활성화(25.7억원) ·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 (25.7억원)	'24년도 예산 편성
9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안 제16조)	-한류 관련 민간단체 지원(7.3억원) · 해외 한류 관련 동호회 활성화(2.5억원)	'23년 사업예산 추계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4.8억원)	'24년도 사업 폐지 추가재정 소요 예상
10	□ 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안 제17조)	- 한류 기업 육성 사업(60억원) · 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7억원) ·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24억원) · 민간 투자 연계 지원(23억원)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6억원)	'24년 타 부서 유사 사업 근거로 추계 추가재정 소요 예상
11	□ 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용자 등 특례(안 제18조)	- 한류 기업 및 한류 연관산업 대상 투·용자 특례 (345.2억원) ·문화산업보증계정 출연(250억원) ·한류 기업 투·용자 기반 조성(45.2억원) ·한류 기업 이차보전 지원(50억원)	'24년 타 부서 유사 사업 근거로 추계 추가재정 소요 예상
12	□ 한류사업자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안 제19조)	- 한류 기업의 수출 기반 조성(279.5억원) ·해외 진출 종합컨설팅 지원(52.5억원) ·해외거점 운영(219억원) ·해외시장개척지원(8억원)	'24년도 예산 편성
13	□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한류 확산 지원(안 제20조)	-비용 추계 곤란	
14	□ 조세의 감면 등 (안 제21조)	-비용 추계 곤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